

## 단기취업(C-4)

<p><b>활동범위 및 해당자</b>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는 계절근로(E-8) 자격 참조</li> </ul> </li> <li>□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통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는 예술통행(E-6) 자격 참조</li> </ul> </li> <li>▣ 광고·패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는 예술통행(E-6) 자격 참조</li> </ul> </li> <li>▣ 강의·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당기방문(C-3)에 해당됨</li> </ul> </li> </ul> </li> <li>▣ 연구·기술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참조</li> </ul> </li> <li>▣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활동(E-7) 자격 참조</li> </ul> </li> <li>▣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li> </ul> </li> <li>▣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li> </ul> </li> </ul> <p>▶ <u>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5)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u></p> </li> </ul>
<p><b>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일</li> </ul>
<p><b>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b></p>	<p><b>1. 아래 대상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li> </ul>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 ④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수입기계 등의 설치 ·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보수성경비를 국가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용역계약서(또는 구매계약서, 사업수주계약서 등) 사본
- ③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 목차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
- ③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④ 고용계약서
-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 ⑥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 ⑦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위반이며, '11.07.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조정의 진정성, 조정자 및 피조정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4.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통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p>③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공연계획서 포함 생략)          ④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p>
<p><b>▶ 목차</b></p> <p><b>공관장 제령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b></p>	<p>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 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 하려는 경우</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 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첨부 1 참조)</li> <li>-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li> </ul> <p>③ 연예활동계획서          ④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p>
	<p>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 하는 사람</p>	<p>②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③ 행사 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p>
	<p>광고 모델의 경우          광고 모델의 경우</p>	<p>◦일반심사 기준</p> <p>② 사업자등록증</p> <p>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li> </ul> <p>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p> <p>⑤ 납세증명서</p> <p>⑥ 기타 기업의 전전성을 증빙하는 서류</p> <p>⑦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p>

## ▶ 목차

경우)

- ⑧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제출)\*,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국내 활동 계획서

\*1) 광고주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  
인 각 1부(총 2부)

\*2)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  
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 ⑨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⑩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 해당 공관 사증발급 신청건만 해당

### ※ 영사 인터뷰 필수

◦ 우대심사 기준 : 우수업체

#### <우대심사 기준 적용대상>

초청 업체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실적 ▶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 업력 5년 이상(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업 등 무관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 것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외국인	▶ 불법체류 디발 고시국가*, 기타 법위반 고위험 국가가 아닐 것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빙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  
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p>②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필요시) 대표이사 경력 관련 증빙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p> <p>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전년도 재무재표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p> <p>④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국민의 수가 5인 이상일 것</p> <p>⑤ 납세증명서</p> <p>⑥ 기타 기업의 전전성을 증빙하는 서류</p> <p>⑦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p> <p>⑧ 국내활동계획서</p> <p>⑨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p> <p>⑩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 해당 공관 사증발급 신청건만 해당</p>
그 밖의 경우	<p>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p> <p>③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선수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협회 (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 및 활동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p>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5.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 가.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공익목적 초청에 의한 강의·강연】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 등  
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단기취업(C-4-5)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 가능

#### <단기취업(C-4-5) 비자 면제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초청자 및 초청목적) 정부(지자체 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 사기업 등이 영리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5) 발급 대상
- (대상기관 제한) 피초청인이 강연·강의·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체류기간 중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p>※ 예시) 피초청인의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 30일 내 5개 비영리기관 범위 내에서 강연·강의·자문활동 가능</p> <p>■ <u>(활동기간 제한)</u> 체류기간 중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u>7일</u>을 초과할 수 없음</p> <p>※ 예시)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에도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p>
--	---

## 6.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5)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 ③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b>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b>	<p><input type="checkbox"/>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li> </ul> </li> <li>◦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결정</li> </ul> </li> <li>◦ 신청 방법 : 비자포털(<a href="http://www.visa.go.kr">www.visa.go.kr</a>)을 통하여 신청</li> <li>◦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임</li> </ul> </li> </ul> </li> <li>◦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사증 종류</li> </ul>
-------------------------	--

사증(VISA)	추천자	허용분야	최대체류기간
C-4-1(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농업	90일
C-4-2(단수)	결혼이민자		
C-4-3(단수)	MOU 체결 외국지자체	어업	
C-4-4(단수)	결혼이민자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VISA)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함
- 비자포털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자 및 허용분야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증 종류를 신청하고 필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제출서류(비자포털에 첨부)

- ① 표준근로계약서
- ②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구인 광고내용 사본 및 최종 구인실적 등)
-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 ㉡ MOU 외국인 :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이력
  -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신분증, 국내용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의 친척 관계도,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친척)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공증불요)
- ④ 숙소 관련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제공 예정인 '숙소시설표'('24년 한시적 시행)
  - ※ 숙소점검 확인서는 계절근로자 입국 직후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 ⑤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 등

**특정국가 국민에 대한 단기취업(C-4-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특정국가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 ※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